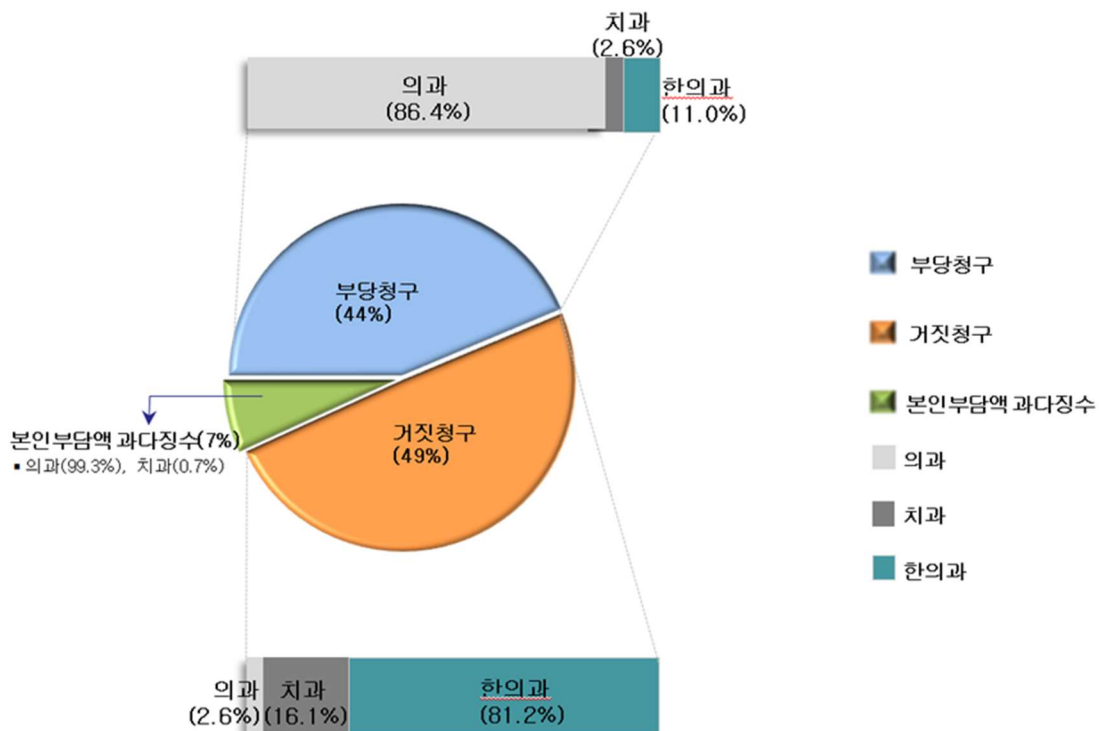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월 조사결과 보도자료 -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



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규정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한편, 검찰과 사법당국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를 사기죄로 보고, 그 부정수급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, 그와 같

은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엄중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(업무정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·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

제99조(과징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15조(벌칙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

급여를 받게 한 자

제118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규정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**보험급여를 받은 사람**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**요양기관**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**전부** 또는 **일부**를 징수한다.

첨부: 심평원 5월 조사결과 보도자료

약사변호사, 약사법, 의료법 자문, 형사소송, 행정소송, 실무적 대응전략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

